

「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
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4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고,
입주자 가점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개성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
특화형 임대주택 근거를 정비하는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의견 등을
반영하여 그간 운영 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

< 주요내용 >

- 가. 매입임대 초기입주자들의 최대 임대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점을 감안
하여 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
(안 제17조)
- 나. 타 유형보다 짧은 청년·신혼부부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을 추가 4년
연장하고자 함(안 제18조 및 제20조)
- 다. 입주자 선정 시 적용하는 가점 항목에 입주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

- 체계화하고자 함(안 별표2, 별표2의2, 별표3, 별표4, 별표4의2 서식 개정)
- 라. 생계·의료수급권자 등에 해당하는 입주자 재계약 시 소득·자산요건 심사를 수급증명서 등으로 대체하여 입주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(안 제17조)
- 마. 노후·불량 매입임대주택 철거 후 신축 선정방식을 간소화하고 매입 임대 건령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반지하 주택 매입을 활성화하고자 함
(안 제6조 및 제40조)
- 바.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38조)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주거복지지원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

- 팩스 : 044-201-5663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
『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주거복지
지원과(전화 044-201-4533, 452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